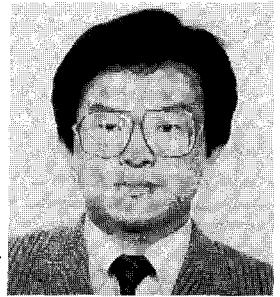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권성수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I. 증여세의 개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어떤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상의 증여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법률상의 증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나 특수관계 인간의 결제 및 명의 신탁 등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증여의제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본다.

①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나 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⑤ 특수관계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⑥ 증여 재산가액의 70%이하의 대가로 재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재산가액의 30%이상의 대가를 받고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⑦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불합리하게 정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 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⑨ 법인의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시세차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법인의 감자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한다.

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 입증금액에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증여세는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위의 증여의제 금액을 합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친족간의 증여에 대한 금액을 공제(증여재산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친족공제 금액은 배우자의 경우(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으로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시의 15%에서부터 과세표

준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의 60%에 이르기까지 모두 5단계의 누진세율.

II.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위 I 의 ⑩항에서와 같이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고려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즉 과세당국은 재산취득에 대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자금출처조사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고 만약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재산취득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료를 수집하여 우선 조사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조사로 자금출처조사가 종결된다.

간접조사 기준 금액

| 구 분 | 주택의 취득시 | 기타자산의 취득시 |
|----------------|-------------------------|--------------------------|
| 1. 세대주인 경우 | | |
| ① 30세 이상(남·녀) | 1억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② 40세 이상(남·녀) | 3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① 30세 이상 | 남자 1억원 미만 여자 5천만원 미만 | 남자 5천만원 미만 여자 3천만원 미만 |
| ② 40세 이상 | 남자 2억원 미만 여자 5천만원 미만 | 남자 1억원 미만 여자 5천만원 미만 |
| 3. 25세 이상(남·녀)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 4. 기타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

이러한 간접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 또는 거래자 등을 상대로 전화, 우편, 방문 등에 의해 호출하거나 증빙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위의 기준이상인 직접조사대상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으면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회신함에 기입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15일만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 : 소득세 납세증명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 예금·적금 : 금융기관의 확인서.
- 부채 : 금융기관 등의 부채증명서.
- 재산처분 대금 :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 전세금 및 보증금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전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추가안내서」를 보내게 되며 추가안내서를 받고도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을 알리는 「증여세 과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납세자가 이 안내문에 대하여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자금출처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어떠한 자금원을 재산취득 자금으로 보아줄 것인가 하는 자금출처의 인정범위 문제인데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과세된 각종소득

- 근로소득 : 소득금액 총액
- 자산소득 : 실제 본인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만 인정
- 기타의 소득 : 본인 명의의 소득금액 총액

② 부동산 양도소득 : 취득자료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인정.

③ 금융자산 : 본인의 소득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확인되는 것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또는 과세된 것만 인정.

④ 금융기관 대출금 :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것만 인정하고 대출용도에 맞지않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

⑤ 기타 부채 : 객관적으로 확실한 채무만 인정. 예를들어 당해 채무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고 거래상대방과의 자금흐름이 제시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⑥ 부동산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에 의하여 확인된 것 중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자료 통보후 인정.

이상과 같은 취득자금원에 의하여 40세 이상인 자는 자료금액의 60% 이상, 30세 이상인 자는 70% 이상, 26세 이상 부녀자인 경우에는 자료금액의 80% 이상을 자금출처로 입증하면 조사는 종결된다.